

1

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(단체보험)

■ 단체를 보험계약자로, 그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

- 지원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이 보험료 전액 지원
-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 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(단, 연간 보험책임금액(U\$5만) 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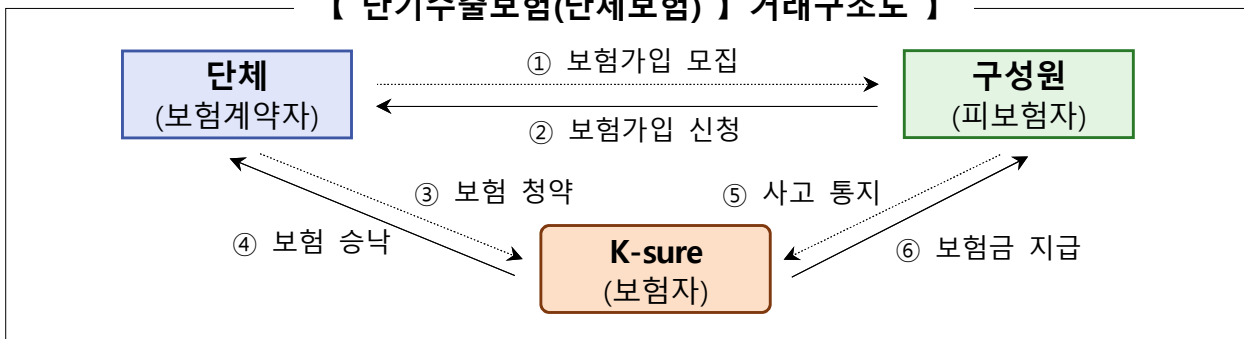
< 단기수출보험 (단체보험) 비교 >

구 분	중소기업Plus+ 단체보험	중견기업Plus+ 단체보험
보험계약자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
피보험자	연간 수출실적 U\$30백만 이하이고, 이용제한기업 (공사 신용등급 R급, 보험(증)료 연체기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	
적용대상거래* (결제기간)	일반수출, 위탁가공무역, 중계무역 (결제기간 1년 이내)	(결제기간 180일 이내)
담보위험	수입자 대금미결제위험, 수입국 위험 등	수입자 대금미결제위험(클레임 제외), 수입국 위험 등
책임금액	연간 U\$5만 이내	
보상비율	95% 이내	90% 이내
보험기간	1년	
면책사항	관련 약관 및 특약 기재사항	
보 험 료	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납부	

\* 해당 거래는 공사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출거래임

이용절차 및 선정시 신청서류

【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거래구조도 】



\* 선정시 신청서류 : 홈페이지(www.ksure.or.kr) 내 [지원사업 → 중소중견 특별지원 → 단체보험] 참조

-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 후, 수입자(L/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)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

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.

-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 담보
- 담보위험
  - 신용위험 : 수입자의 지급불능, 지급거절, 지급지체 등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
  - 비상위험 : 수입국의 전쟁, 내란, 환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
- 가입대상 거래

구 분	내 용
일반수출	·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, 국내에서 생산·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(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출하는 거래 포함)
위탁가공무역	·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·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
중계무역	·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
재 판 매	· 수출자가 해외지사(현지법인 포함)에 물품을 수출하고,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

※ 해당 거래는 공사 단기수출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출거래임

- 운영방식
  -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

구 분	개별보험	포괄보험
정 의	·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출보험가입	· 사전에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여 특정거래 형태 또는 결제조건 등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종합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
장 점	· 수출거래건별 선택적 보험 가입	·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 · 대상거래 전체 위험관리 가능 · 비교적 낮은 보험요율 · 수출통지 절차 간편
단 점	·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· 포괄보험 대비 높은 보험료	· 저위험 거래에 대해서도 가입

-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

구 분	내 용
인수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(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)</li> <li>☞ 다만,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</li> </ul>
보상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</li> <li>☞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나, 포괄 보험의 경우, 한도 제한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</li> </ul>

\*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는 회전한도 운영 원칙

\* 회전한도 :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

● 보험가액, 보험금액 등

구 분	내 용
보험가액	수출대금
부 보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수출, 위탁가공무역 : 중소기업 100% / 중견기업 97.5% / 대기업 95%</li> <li>중계무역 : (개별) 수입금액/수출금액 비율 이내, (포괄) 신용장 90%, 무신용장 85%</li> <li>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</li> </ul>
보험금액	보험가액 × 부보율
지급보험금	(손실액 - 면책대상손실) × 부보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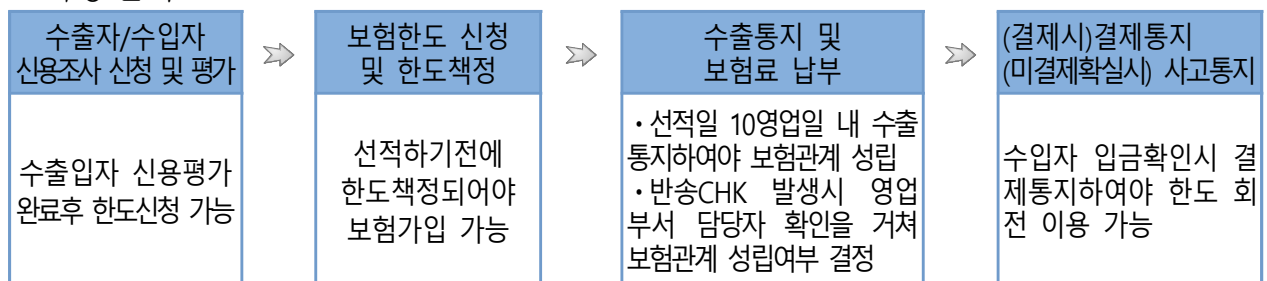
● 보험료

-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(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),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

신청 및 이용절차입니다.

● 신청 :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신청(全 과정 사이버영업점 이용)

● 이용절차



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.

### 단기수출보험 이용시 주의할 점

· 단기수출보험(선적후)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보험으로서,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
·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### 보상받을 수 없는 주요사유(면책사유)

-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
  -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(만기일)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
  - 즉, 수출기업이 동일한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, 이전 선적건의 수출대금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
- 물품의 멸실,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
  -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관련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(적하보험 활용하여야 함)
-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(마약거래 등)
-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
  -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
  -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
- 보험계약자(수출자),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
  - 물품하자, 선적기일 미준수, 계약조건 위배 등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기업의 귀책이 있는 경우
-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K-SURE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
  - 보험계약자는 보험한도 신청 및 수출통지 시에 공사가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함
- 인수한도를 책정받고 수출을 하였으나 수출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
-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(보험료 납부기일까지 미납시 보험관계 해제)
- 기타 조사에 협조할 의무 등 약관상 수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

### ※ 변제충당

-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개의 대금채권·채무가 있는 경우, 수입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(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) 도래 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
- 수개의 채권·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,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

-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,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K-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

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.

- 수출기업이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기관(무역협회, aT)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수출기업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

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.

- 보증대상업체 :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
(K-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,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)
- 주요 계약사항

구분	주요내용
보증계약자	금융기관
보증하는 채무	대출원금 및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
보증비율	90% 이내
보증기간	1년 이내
보증약정	K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·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,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서명

- 보증절차
  - 보증이용 상담 → 수출자 신용평가 → 보증 신청 → 보증한도 책정 →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 체결 → 보증서 발급 → 신용보증부 대출

선정시 추후 신청·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

- 신청 : (온라인)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 
(오프라인) 신청서류 영업부서 제출
  - 온라인 서류제출이 원칙이나, 필요시 오프라인 제출 가능
  - 신청양식 : 홈페이지(www.ksure.or.kr) 내 정보광장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

-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K-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

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는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.

- 금융기관이 수출채권 매입 시, 담보로서 기능하는 상품으로, 단기수출보험 연계 의무화를 통하여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
- 대상거래
  -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거래
  - 수출결제조건 신용장(L/C) 및 무신용장(D/A, D/P, T/T 등) 거래 모두 가능
- 보증대상기업 : 공사가 정한 이용 요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
- 수입자(수입국) : 공사의 이용 제한 수입자 또는 인수 제한 국가가 아닌 경우
- 보증절차
  - 보증상담 → 수출자·수입자 신용평가 → 보증신청 → 보증한도 책정 → 보증약정체결 → 보증서 발급 → 대출(수출)통지 →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 → 보증부 대출(매입)
- 주요 계약사항

구 분	주 요 내 용
보증상대방	금융기관
보증한도	거래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
보증비율	90% 이내
단기수출보험 연계 가입	<b>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 의무</b> ☞ K-SURE가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과실이 없으면 연계된 단기수출보험 보험금만큼 K-SURE앞 상환의무 면제
보증(보험)료 납부	매입 건별로 보증/보험료 납부, 은행 매입전 납부
보증약정	K-SURE와 수출기업간 권리·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,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

신청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.

- 신청 : (온라인) 사이버영업점에 접속하여 스캔파일 업로드(서류 원본 추후 보완)
  - 부득이할 경우 팩스, 이메일 등 제출
  - 사이버영업점 서류제출 경로 : 수출신용보증 → 신청/조회 → 보증신청서류
  - 신청양식 : 홈페이지(www.ksure.or.kr) 내 정보광장 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

- K-SURE의 해외지사 및 전세계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후 신청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

신청 및 수수료입니다.

- 신청 : 사이버영업점에 로그인 하여 신청 (필요서류 없음)
- 조사보고서는 수출지원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, 보고서 종류(요약, Full Report 등)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짐

#### < 신용조사 수수료 >

보고서종류	기업규모	가격(VAT 포함)		
		일반조사	재무제표미비	신용조사불가자/ 장기소요(40일초과)
요약보고서	중소·중견기업	33,000원	22,000원	면제
	대기업	66,000원	22,000원	면제
Full Report	중소·중견기업	49,500원	33,000원	면제
	대기업	99,000원	33,000원	면제

\*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런 경우 재무제표미비 비용 적용

\* 보고서 샘플은 [공사 홈페이지 → 지원사업 → 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→ 제도개요 → 샘플보기]에서 확인 가능

#### <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>

납부방식	청구방법 (조사신청시에 선택)	납부기한
가상계좌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한 수수료 일괄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</li> <li>- 세금계산서 발행일 : 조사 완료일 익월 첫영업일</li> <li>- 마스터대표사용자 및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, 모든 사용자가 사이버영업점에서 조회 가능</li> </ul>	조사완료일 익월 27일까지
신용카드	조사완료시 납부안내	조사완료일 당월 말일까지

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입니다.

- 신용조사 신청 → 조사 및 평가 → 보고서 조회 →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

신용조사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[국외기업신용조사 - 신용조사 신청] 메뉴 선택</li> <li>· 공사 DB검색</li> <li>· 조사방법 선택(구매/신규신청)</li> <li>· 수입자 기본정보* 입력 → 신청완료</li> <li>* 주요정보 : 국가, 상호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, 국외기업조사 협조 여부, 상장 여부 등</li> </ul>
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고서 접수(평균 조사기간 3주가량 소요)</li> <li>·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</li> </ul>
보고서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자 이메일로 보고서 발송</li> <li>· 사이버영업점에서도 보고서 조회 가능</li> <li>· '국외기업신용조사 - 신용조사내역 및 평가보고서'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</li> </ul>
수수료 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청시 선택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가상계좌 입금)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</li> <li>- (신용카드 결제) 조사보고서 제공일 말일까지 결제</li> </ul> </li> <li>* 신용카드 결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며, 결제기일 내 카드결제가 안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따라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함</li> </ul>